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벧엘주야간보호센터운영규정 제3장-제8조 발췌)

벧엘주야간보호센터

제8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고시에 정한 바에 따라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 및 식대, 간식비 등 비급여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별지에 따른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39,810**	**36,850**	**34,020**	**32,470**	**30,92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3,360**	**49,420**	**45,620**	**44,070**	**42,50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6,360**	**61,480**	**56,760**	**55,210**	**53,640**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73,110**	**67,720**	**62,570**	**61,000**	**59,450**
12시간 이상	**78,400**	**72,630**	**67,100**	**65,540**	**63,990**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지에 관한고시 해당자)	 9% 7.5% 6%

○ 주야간보호 비급여항목 급여비용 (원) (30일 기준)

구분	비용	산출근거	금액
식재료비	1회 3,000원	점심:3,000원,저녁3,000원	180,000
간식비	무료제공		0
이미용비	무료제공		0
기타	실비		실비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바)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변경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개인 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3)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4)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프로그램 진행

(5) 송영서비스

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